



제413회국회(임시회)
제1차 여성가족위원회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부정수급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환수 근거 마련〉
■ 강민국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125556호)

2024. 2.

여 성 가 족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지민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□ 부정수급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환수 근거 마련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강민국의원 등 11인

나. 발 의 일 : 2023. 11. 21.

다. 회 부 일 : 2023. 11. 22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의 환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2021. 9.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·군·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된 아이돌봄서비스비용 부정수급 총액이 27,751,943원(27건)에 달하는 데도 전체에 대해 부정수급금의 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7조).

Ⅲ. 검토의견

□ 부정수급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환수 근거 마련(안 제27조제2항·제3항)

개정안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보호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보호자에게 연대하여 반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, ②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강제징수 등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)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7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제1항제2호의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보호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보호자에게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

현행	개정안
<신설>	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현행법(제20조제1항, 제35조제2항제6호1))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또한 현행법(제27조제2호2))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원센터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

1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
제2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제35조(벌칙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

7. (생략)

2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
제27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설치·운영자,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3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, ②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참고로, 2021년 9월 발표된 감사원의 여성가족부 정기감사 보고서³⁾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·군·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된 아이돌봄서비스비용 부정수급액은 27,751,943원(27건)임.

이에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(지원)받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중앙지원센터 등 보조사업자와 보호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.

다만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제33조·제33조의34)은 이미 부

3)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·군·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된 아이돌봄서비스비용 부정수급액이 27,751,943원(27건)이고, 이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 금액, 사건의 경중 등에 대한 기준 없이 고발하지 않고 있으므로, 여성가족부에 고발조치 및 제재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27건에 대하여는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“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적정” 통보를 하였음.

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 명령,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⁵⁾가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,

이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⁶⁾.

참고로,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이에 대한 환수규정을 아이돌봄 지원법 상 마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하는 의견임.

4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33조(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) ① 중앙관서의 장,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
2.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3.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② ~ ④ (생략)

제33조의3(강제징수)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,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1.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: 중앙관서의 장

2.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: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)

3. (생략)

② (생략)

5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7. (생략)

8. “보조금수령자”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.

6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보조금 환수에 관한 입법례는 개정안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(지원)받은 비용을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가 “연대하여 납부”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에게 각각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649